

일본민법의 형성과 식민지조선에서의 적용

: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남기현(성균관대학교)

【발표요지】

이번 발표의 목적은 1896 년(메이지 29 년) 법률 제 89 호에 규정된 일본민법과 그 이후 시행된 민사법 관련 법률이 식민지조선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식민지조선 사이에서 형성된 ‘법적 구조’의 형태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이기도 하다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1888 년(메이지 21 년)에 민법전을 편찬했다. 하지만 그 시행은 연기되었다. 1896 년에는 총칙, 물권, 채권 부분이, 1898 년에는 친족, 상속 부분이 공포되었고, 1899 년 7 월 16 일부터 전부 시행되었다.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1899 년부터 사실상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민법 관련 법률은 식민지조선에서도 적용되었다.

1912 년 8 월,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이 발표되었다. 일본 내각과 조선총독부 사이에서 약 2 년간의 조정 후에 만들어진 법령이었다. 이 법령의 각 조항은 내용별로 보면 크게 2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본 민사관련법을 ‘의용(依用)’하는 것을 정한 제 1 항이다. 둘째, 식민지조선에만 적용되는 사항인 ‘특별조항’이다.

<조선민사령>은 일본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일본과는 다르게 법률을 적용해서 통치하려는 조선총독부 및 일본정부의 방침이 담겨져 있던 법령이었다.

【약력】

(1) 경력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 박사 졸업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센터 방문학자
- 가천대학교,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강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 현재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2) 주요 논문

- 「일제하 조선토지조사사업 계획안의 변경 과정」, 『사림』 32, 2009
- 「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방식의 다양성, 창원군과 마산부의 비교」, 『대동문화연구』 82, 2013
-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선인, 2014
- 「'경무대 앞 발포사건' 책임자 처벌 재판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22, 2016
- 「1909 년 국민대연설회 전후 대한협회의 행보」, 『인문과학연구』 24, 2017